

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합2042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희

피고보조참가인1. 주식회사 C

2. D

3. E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재경

변론 종결2023. 4. 6.

판결 선고2023. 5. 4.

주 문

1.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47,792,9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7,792,95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2016. 5. 4.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매매계약

1) C은 2021.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2021.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21.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아래와 같이 말소하였다.

14	A은행	678,000,000원2) 최초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은 1,027,000,000원이었으나, 2013. 7. 26. 67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15	A은행	130,000,000원
16	A은행	94,800,000원

4) C과 피고는 2021. 5. 17. 공장매매계약서를 추후에 정산 후 재작성하기로 협의하고, 2021. 6.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의 대출 잔액

1) C은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11. 22. C이 원고에 대하여 연체한 대출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은 147,617,948원이다.

2) C은 대구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위 대출원금 및 이자 연체액 합계 147,617,98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38,056,328원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인 2021. 12.

1.까지는 연 6.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29.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위 법원 2021차전18738), 2021. 12. 16.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5. 4.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의 관계에서 채권차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3), F은행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피고는 C의 A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외에는 별다른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C의 실소유주 D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고, 위 피고의 인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H가 C의 실제 소유자인 D의 처 E에게 7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한 행위와 H의 친척인 I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각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게 위와 같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D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인격인 C의 적극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H가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주었다거나 E이 I에 대하여 담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차용금채권 내지 담보는 법률적으로 E 개인에게 귀속될 뿐 법인인 C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E 등의 공정증서 작성행위나 담보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36296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까지 C에게 골재 등을 납품하는 등 C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② C은 2021. 5.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6일 후인 2021. 5. 12. 피고에게 24억 원 가량의 공장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런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C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인 2021. 5.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협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어떠한 회사가 사업의 기반이 되는 거액의 물적 자산을 양도하면서 아무런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불과 6일 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급박하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1. 5.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은행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70,128,655원4) 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해 있던 부분인 1,497,200,000원5) 과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공동담보에 속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7,792,9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7,792,95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성호

판사권재호

판사박소영

별지

- 1)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를 기준으로 한 을구 순위번호이다.
- 2) 최초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은 1,027,000,000원이었으나, 2013. 7. 26. 67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 4) = ① 대출원금 및 2021. 11. 22.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147,617,948원 + ② 2021. 11. 23.부터 2021. 12. 1.까지 연 6.6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5,012원 + ③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4. 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285,695원
- 5) = 시가 인정액 2,400,000,000원 - (A은행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78,000,000원 + 130,000,000원 + 94,800,000원)